

계약지침

[제정]2019.06.04.

[개정]2022.10.26.

[개정]2024.06.11.

[개정]2025.05.1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케이티엠오에스북부(이하 "회사"라 한다) 『회계규정』 제5장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구매계약의 "구매요구금액" 또는 공사 및 용역계약의 "발주 금액"이라 함은 구매요구부서 또는 발주부서(구매요구기관 또는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입찰 공고 및 계약방법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구매요구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발주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사급자재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목표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으로 제6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계약 담당이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4조(계약의 원칙)

-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장 또는 회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약방법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과 구매요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가장 유리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 ① 사장은 회사의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

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회사 이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0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위탁수수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목표가격

제6조(목표가격)

① 계약담당은 계약지침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가격조사와 분석을 통해 회사의 이익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목표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가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실례가격
2. 조정실례가격
3.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4. 견적가격 또는 견적총액 비교가격
5.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
6.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7. 기타 계약담당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

③ 계약담당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계약
3. 신규개발품·특수규격 등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사업의 특성상 목표가격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④ 계약담당은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및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며 목표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산 중 부동산 매각(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로서 매각입찰공고를 2회 실시하여도 매각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 입찰부터 최초 목표가격의 100분의 80(회사에서 보유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서 경영기획총괄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목표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매회 그 목표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6조의2(조정실례가격)

- ① 계약담당은 동일 물품에 대한 직전 계약 이후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였거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직전 거래실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조정 실례가격을 목표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가격변동요인에 의해 직전실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환율, 원자재가격 및 물가의 변동이 있을 때이며, 그 반영기준, 반영범위 및 반영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하여 직전실례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 물품에 대한 직전계약의 낙찰가가 목표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었거나 당해 년도에 동일 물품을 다회 구매하여 목표가격을 고정할 필요가 있을 때이며, 세부 기준 및 적용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3(견적총액비교가격)

- ① 계약담당은 신규 물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위한 시험(BMT)을 시행하기 전에 견적을 제출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견적으로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위한 시험에 통과한 자의 견적만을 대상으로 그 총액을 비교하여 목표가격에 반영한다.

제 3 장 계약의 방법

제7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일 것
 5. 기타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것
- ② 제1항과 별개로 해당 입찰 건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사가 따로 정하는 경영능력 및 기술능력 평가가 필요하거나, 기술요구서에 의한 적합성 또는 망 연동성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하 "BMT"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러한 자와의 계약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경쟁방법)

- ① 경쟁에 의한 계약은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2인(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한다.
- ②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9조(입찰공고)

-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일간신문 게재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 등 공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통지 등의 행위에 의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은 경쟁상황, 이행의 난이도, 기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낙찰자 결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 ①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에게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조건들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 ② 계약담당이 입찰보증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 및 개찰)

- ① 회사의 입찰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개찰은 입찰공고에서 표시한 방법에 의하며,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직접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방법)

-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목표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목표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경쟁입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계약의 경우에는 주된 계약 목적물을 기준으로 낙찰자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서의 도착 일시까지 지정된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모, 발주금액을 감안한 시공능력공시금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사항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기술 또는 성능 등이 요구되는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구매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 현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납품

실적 및 능력

4.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
5.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6. 물품의 구매,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의 경우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러한 자와의 계약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성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수의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출, 비용절감, 소요 시간 단축 등 회사 이익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06.11.>
2. 회사의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비상재해, 긴급한 사업추진 또는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4. 품질확보 또는 특정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정회사의 물품을 공급받는 것이 회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5.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 가. 구매
 - 1) 특허품, 실용신안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2)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단일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단일인인 경우
 - 3)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이나 기계의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 4) 증설 및 추가구매 물품으로서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직전 공급사와 동일제품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나. 공사

- 1)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2)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3)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4)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5)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6)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다. 용역, 기타

- 1) 학술연구·설계·감리·조사·측량·시운전·검정·훈련·시설 관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 2)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
6. 구매요구금액 3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 발주금액 3천만원 미만인 공사, 용역, 기타 계약(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의 경우
<개정 2024.06.11.>
7. 경영능력 및 기술능력 평가 또는 기술요구서에 의한 BMT가 필요 시 이를 통과한 경우
8. <삭제>*<개정 2024.06.11.>*

제19조(기타 수의계약)

- ① 제15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목표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목표가격을 변경하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및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할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목표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0조(가격견적)

- ① 1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복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와 발주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4.06.11.>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목표가격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표가격을 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 및 발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약에 있어서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종합평가 경쟁입찰)

- ① 계약담당은 품질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당해 가격으로 낙찰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협상하여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를 제외하고 결정한다.
- ③ 신규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시험(BMT)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구매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한 품질은 운용품질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종합계약) 계약담당은 동일장소에서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사업자가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주계약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공동계약)

-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제조, 공사,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 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계약) 계약담당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목표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5조(협상계약)

-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구매,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

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이행에 필요한 규격서 및 설계서 등을 미리 확정 또는 작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목적물에 대한 시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할 때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업체 담합으로 공정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규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계약담당이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및 업체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협상계약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 ② 계약담당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협상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후 협상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26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공사계약)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또는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장기 협력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가, 요율 또는 기능점수(functional Point) 등을 활용한 연간 가격결정기준 및 방법, 대금지급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구매계약
 3. 장비 및 S/W의 유지보수, 개량개선 계약
 4. VMI 물품, 공급안정성 및 품질확보가 요구되는 물품, 독점적 기술로 구현된 물품 등의 구매계약
- ③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④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체결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 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⑥ 연도별 사업집행 계획이 확정된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

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단가계약) 계약담당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공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구매 및 설치 일괄계약)

- ① 계약담당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구매 및 설치가 1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계약(이하 "일괄계약"이라 한다)을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목표가격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매 및 설치 건 각각에 대한 목표가격을 작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긴급계약)

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는 당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이행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돌발 수요의 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계약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예정자, 이행기간, 목표가격 결정방법 및 대가지급방법 등을 명백히 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구매요구부서 또는 발주부서 직접계약)

- ① 구매요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장은 사업의 신속한 수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구매로서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장비 등의 수리로서 직접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31조(계약서의 작성)

-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적용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은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서 등 계약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까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물품구매의 경우 "품목별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단가를 기재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정 산업무 등은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 ⑤ 계약담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이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 ① 계약담당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정보통신공사사업법 등에 의한 공제조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정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익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설 2022.10.26.>
4.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 등급이 A이상인 경우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계약담당은 당해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제2항 본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대금지급보증 또는 반환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사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증서 또는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보증금 등의 처리)

-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 지침 제3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② 보증보험증권등으로 계약보증금 등을 받은 후 제1항에 의한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4조(이행보증)

-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제32조 제6항에 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② 연대보증인은 제9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은 제3항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계약담당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필요할 경우 용역 등의 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 ① 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검사)

-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0.26.>
-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계약담당은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⑤ 계약담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⑥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 및 설치일괄계약의 경우에는 검사를 장비의 실제 인수시 협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매각계약의 경우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7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겹침)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겹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38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담당은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생략한 경우는 "목적물 인수일 또는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말,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 그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③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 규정에서 정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미지급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평균연체이자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에 있어

서의 연체이자율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로 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3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대가의 수납)

① 계약담당은 재산의 매각, 대부 및 용역의 공급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익 법인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2.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정액 이상의 은행 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
3. 기타 계약 관례상 대가의 선납으로는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② 재산 등의 매각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한 이자를 가산하여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 소유권이전방법, 대가납부보장책, 위험 또는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당해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2. 대가선납으로는 당해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분납에 의하는 것이 회사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대가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평균이자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지연이자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토목공사 중 철거공사, 건축공사 중 철거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중 시설물제거공사, 비계공사 중 구조물해체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41조(하자검사)

- ① 계약담당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

-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구매 및 설치 일괄계약,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에 의해 산출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 및 회사 귀속의 경우에는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시설운용부서에서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4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연대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계약금액 조정)

- ① 계약담당은 물품의 구매, 공사, 용역 및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물품·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지체상금)

- ① 계약담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구매: 1000분의 0.75
 2. 공사: 1000분의 0.5
 3.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25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2.5
- ④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45조(계약의 해제·해지)

- ① 계약담당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은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6조(협력사)

- ① 통신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의 경영능력, 재무상태, 기술개발능력, 실적 및 회사와의 협력관계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에 의하여 협력사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계약담당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하여 2년 이상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장기협력사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1. 공급안정성 및 품질확보가 요구되는 반복 구매물품
 2. VMI 물품
 3. 대체협력사가 없거나 독점적 기술로 구현된 물품
 4. 지속적인 S/W 개량개선이 필요한 용역
- ③ 제2항에 의한 장기협력사에 대해서는 제26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일정기간 배타적 납품 보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장기협력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품질, 가격 등에 의한 물량차등이 있을 수 있으며, 배타적 납품보장은 당해 기간 동안 동일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수주한 사업 등의 계약업무 처리)

- ① 정부, 지방자치 단체 등 회사 이외의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경우의 계약업무 처리절차, 방법 등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계약한 내용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계약요청 및 처리사항)

- ①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장은 당해 물품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최대한 세부적으로 기술된 소요계획을 계약담당에게 제공하며, 연간 구매횟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은 당해 물품의 구매, 공사, 용역 등이 적기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약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을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장에게 제공하며,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납품기한, 공사기간, 용역수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요청한다.
- ③ 제2항의 행정소요기간과는 별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담당은 물품별로 부품 수급 등 제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장에게 통보하며,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2019.06.04.>

본 지침은 2019년 06월0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6.>

본 지침은 2022년 10월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6.11.>

본 지침은 2024년 06월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5.19.>

본 지침은 2025년 05월19일로부터 시행한다.